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및 임기제 도입〉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63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소방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및 2년 임기제 도입 등	3
2. 소방청 차장의 계급 및 사무를 이 법에 규정	2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15인
2. 제안연월일 : 2025. 7. 23.
3. 회부연월일 : 2025.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은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소방사무는 그 특성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소방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명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임명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와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치권력으로부터 소방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소방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소방청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를 강화하여 소방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66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소방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및 2년 임기제 도입 등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중임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소방청장) ①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며,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②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국가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방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소방청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소방청장부터 적용한다.

현행 소방청장 임명 제도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고(제34조제7항 및 제8항)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소방청장의 계급을 소방총감으로 정하고 있으며(제4조), 「소방공무원법」에서 소방청장 임명은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제6조제1항).

개정안은 소방청장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② 소방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을 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③ 그 밖에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고, 소방청장의 사무를 국가의 소방사무 총괄, 소방청 업무 관장,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1)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 7. 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소방청장 임명 절차: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내용	근거	
		현행	개정안 (제3조의2)
조직법상의 근거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둠	「정부조직법」 제34조제8항	제1항
계급	소방총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제1항
임명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이 임명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제2항 전단
인사청문 여부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	제2항 후단
사무	국가의 소방사무 총괄, 소방청 업무 관장,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²⁾	제3항
임기	2년, 중임 제한	-	제4항

개정안은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강화하고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소방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중장기 소방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가. 소방청장 인사청문 실시

개정안은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안 제3조의3제2항 후단 신설).

인사청문제도는 폐쇄적이었던 고위직 공직자 임명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유능하고 도덕성을 갖춘 인재가 적재적소에 임명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절차로서, 헌법 상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을 대상으로 「국회법」 개정(2000. 2. 16)과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음.

당시에는 헌법에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다른 고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자질과 능력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 등으로 2025년 8월 현재 총 67개 직위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사청문 대상 직위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외에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 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 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 인권위원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 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 방송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관장

** 국가인권위원회 : 독립기구 기관장

그 동안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는 사회적 이슈, 정치적 요구를 고려해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되어 왔다는 평가가 있는 점³⁾을 고려할 때, 특정 직위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 업무의 특수성이나 영향력, 그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과 같이 소방청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으로 임기 중 도덕성 시비를 최소화하고, 후보자에 대한 소방 정책 이해도, 전문성, 재난대응 역량 등을 면밀하게

3)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p.94, 김형호(2018.8.), 유사취지 평가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위헌성과 과제」, 저스티스(2015.2.) p.100~101, 김명식

검증할 수 있으며, 인사 청문을 통과한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식 임명 후 국회와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할 수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임.

한편, 소방청장은 소방청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소방청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하는 소방활동,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등의 소방지원활동,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의 제거활동과 같은 생활안전활동을 업무로 하고 있음⁴⁾.

4)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험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이러한 소방청 소관 업무는 그 주된 성격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임명과정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지 여부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청은 소방 사무는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소방기본법」)으로 하는데, 주로 국민에게 행하는 서비스 성격 중심 행정으로 사법 권한 행사, 국가안보 수호, 해양주권 보호 등을 수행하는 경찰, 해양경찰과 다른 특성을 가지며, 또한, 소방청장의 임용 권한은 중앙과 소수의 시도 소방공무원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17. 12. 26.>

<소방-경찰-해경 비교>

구분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사무	육상에서의 재난 대응에 관한 사무 ※ (근거) 「소방기본법」,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치안에 관한 사무 ※ (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 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해양에서 경찰·오염 방재에 관한 사무 ※ (근거) 「해양경찰법」, 「해 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기구	(본청) 청장, 1차장, 4국, 26과 (소속) 3소속기관 ※ (시도) 18지방본부	(본부) 청장, 1차장, 1본부장, 21국, 57과 (소속) 5소속기관, 18지방청	(본부) 청장, 1차장, 8국, 30과 (소속) 3소속기관, 5지방청
정원	총 67,118명 (본청 286, 소속 615, 시도 66,217)	총 136,759명 (본청 1,894, 소속 134,865)	총 13,544명 (본청 515, 소속 13,029)
임용권 행사	소방청장 : 927명(1.4%) 시도지사 : 66,191명(98.6%)	경찰청장 : 136,759명	해양경찰청장 : 13,544명
인사 청문	미 실시	실시	미 실시
임기	정하지 않음	2년, 중임불가	2년, 중임불가

(자료: 소방청)

나. 소방청장 임명절차 강화

개정안은 소방청장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의3제2항 전단 신설).

대통령이 청 단위 행정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방식은 크게 국무총리 등의 제청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과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가지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대통령이 행정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 등의 제청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행정부 내의 조정 기능·협업 체계를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임.

현재 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⁵⁾, ②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며⁶⁾,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⁷⁾,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

5) 「대한민국헌법」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6)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⁸⁾.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나 기관의 행정적·정치적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장관이나 총리의 검토절차 없이 신속한 임명이 가능해서 긴급 상황이나 위기 대응조직의 경우 빠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임.

현재,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①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재외동포청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국가유산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⁹⁾, 우주항공청장¹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¹¹⁾은 관계 부처의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8) 「해양경찰법」

제11조(해양경찰청장)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9) 이상에 나열된 청장에 대해서는 각각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제30조(외교부), 제33조(국방부),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제39조(보건복지부), 제40조(환경부)에서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개별법에서 임용절차를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별도로 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8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7조), 개별법에 특별히 임명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장의 제청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함.

참고로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정부조직법」 제34조제8항), 소방청장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됨.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장의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있고,

②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되¹²⁾ 관계 부처의 장의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있음.

개정안은 소방청장의 임명절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10)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보(補)한다.

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

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6. 9.>

③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0. 6. 9.>

④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청장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하여 소방청장 인사 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 제도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소방청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경우, 대통령의 소방청장 인사 관련 결정이 빠르고 소방정책 추진에 있어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소방청장과 대통령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다소 완화되어 소방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방청장 임명 절차는 각 제도의 장·단점과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보임. 다만, 현재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는 장관과 청장은 국무총리 또는 관계 부처 장관의 제청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2017년 7월에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각각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과 달리 소방청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육상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소방청의 부처 특성¹³⁾이

13)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대형 재난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을 수행하는 등 지휘 공백 생길 경우, 국가 재난 대응 역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게 임명할 필요성이 요구됨.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고려 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
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

다. 소방청장 2년 임기제 도입 및 중임 금지

개정안은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하고 있음
(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개정안과 같이 소방청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경우 소방정책의 통일성·일관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소방정책 수립·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방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소방청장 임기 현황>

이 름	재임기간(임기)	임명자	비고
조송래	32개월('14.11.19. ~ '17.07.26.)	박근혜 대통령	국민안전처
조종묵	16개월('17.08.08. ~ '18.12.15.)	문재인 대통령	소방청
정문호	22개월('18.12.15. ~ '20.11.02.)	문재인 대통령	소방청
신열우	13개월('20.11.02. ~ '21.12.04.)	문재인 대통령	소방청
이흥교	10개월('21.12.04. ~ '22.10.22.)	문재인 대통령	소방청
남화영	13개월('23.05.04. ~ '24.06.30.)	윤석열 대통령	소방청
허석곤	13개월('24.06.30. ~ 현재)	윤석열 대통령	소방청

(자료: 소방청)

다만, 소방청장의 임기제 도입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소방청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기관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기관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임. 청 단위 기관 가운데 경찰청, 해양경찰청, 검찰청만 임기 규정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수사, 조사 등의 직무 특성¹⁴⁾상 독립성과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해양경찰법」

제11조(해양경찰청장)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3.>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

중립성이 타 기관에 비해 엄격하게 요구되고 법적으로 임기를 정하여 신분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소방청의 경우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있으므로 경찰청·해양경찰청·검찰청의 업무와 비교해서 정치권력 등 외부로부터의 압력 행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소방청장의 임기제 도입이 소방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 소방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 정책의 기본방향,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소방업무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소방기본법」 제6조15)) 소방

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3.>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3.>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3.>

⑨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간첩·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13.>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13.>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1. 13.>

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13.>

⑤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15)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소방청장의 2년 임기와 중임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2년 임기와 중임 불가 요건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재 주요 임기제 기관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살펴보면, 검찰총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2년 임기를 규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관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업무의 연속성보다는 임기 동안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중시한 것으로 보임.

한편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은 3년 임기를 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7. 24.>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④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⑤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하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인데 이는 해당기관의 독립성 이외에도 업무의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임.

<법률에 임기를 규정한 주요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규정>

구 분	소속	임기 및 연임규정	근거법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2년/중임불가	「검찰청법」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2년/중임불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	2년/중임불가	「해양경찰법」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3년/1회 연임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3년/1회 연임 가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3년/1회 연임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총리	3년/1회 연임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3년/1회 연임 가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은 소방 정책은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소방청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 사무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 행정의 성격이 강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상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더라도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어¹⁶⁾ 소방청장이 연령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당연퇴직하여야 하므로 2년의 임기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6)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소방공무원법」

제25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다. 소방청장 계급, 사무를 이 법에 규정

개정안은 소방청장을 치안총감으로 보하도록 하고, 소방사무총괄, 소방청 업무 관장,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등 소방청장의 사무를 이 법에 규정하고 있음(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개정안은 소방청장 임용시 제청 절차 및 인사청문 제도 도입과 임기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청장 임용과 밀접한 관계있는 내용인 소방청장의 사무, 계급 등을 이 법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소방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이 법에 일괄해서 규정한다는 점에서 소방청장 임명 절차에 관한 수범자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 제3조의2제1항과 제3항의 내용은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방청장 인사청문제도나 임기제를 도입과 관계 없이 별도로 이 법에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임.

참고로 ‘청’ 단위의 차관급 기관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청장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기관장의 계급, 임명절차, 사무, 임기, 중임 여부에 대해 각각 국가경찰 등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해양경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양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임명 관련 근거 법률>

□ 경찰청장: 근거, 계급, 임명절차 및 인사청문, 사무, 임기, 중임금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해양경찰청장: 근거, 계급, 임명절차, 사무, 임기, 중임금지

「해양경찰법」

제11조(해양경찰청장)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2. 소방청 차장의 계급 및 사무를 이 법에 규정

개정안은 소방청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하고, 소방청장을 보좌하며 소방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청 차장의 계급과 사무를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u>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u> ② ~ ⑥ (생략)	<u>제3조의3(소방청 차장) ① 소방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u> <u>② 차장은 소방청장을 보좌하며, 소방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 제6조(임용권자) ① ----- ----- ----- -----, -----<u>소방령</u>-----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재 소방청 차장의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은 소방청을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하고 소방청의 기관으로 소방 공무원인 소방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¹⁷⁾.

또한,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에 대하여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제7조제1항),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조제2항)¹⁸⁾.

17) 「정부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 7. 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 7. 26.>

18)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소방청 차장의 계급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청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조 및 제5조).

한편, 임용 절차에 관해서는 현행법 제6조제1항에서 소방청 차장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흠어져 있는 소방차장의 계급, 사무, 임명 절차를 이 법 제3조의3에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내 용	근거	
		현행	개정안 (제3조의3)
조직법상 근거	소방청에 차장을 둠	정부조직법 제34조제8항	제1항
계급	소방정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제1항
임명절차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사무	소방청장 보좌, 소방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	제2항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이 소방청 차장의 계급, 사무 등을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는 경우, 수범자가 용이하게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소방청 차장의 경우, 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청’ 단위의 차관급 기관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경찰청 차장의 계급과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임명 절차는 「경찰공무원법」(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조직법」에서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제34조제6항).

이에 비해 해양경찰청 차장은 그 근거와 사무는 「국가공무원법」에, 임명 절차는 「경찰공무원법」에, 계급은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하고 있어,

현행 소방청 차장의 근거, 임명 절차, 계급 규정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임명 관련 근거 법률>

□ 경찰청 차장

① 근거, 계급, 사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찰청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용절차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해양경찰청 차장

① 근거, 사무

「국가공무원법」

제44조(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② 계급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5조(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③ 임용절차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참고「해양경찰법」**

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 의 처

02)6788-5351